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2025. 12. 22.



KOELGA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승강기 분야)

(단체협약 제57조 관련)

- 검사자의 연간 1일평균 환산검사대수는 6.5로 한다.

연간 지사별 일평균대수는 지역본부 내에서 정하여 관리하며, 검사자별 적정처리 대수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검사자별 적정처리대수 = 검사자별 검사투입일수 × 소속지사의 1일 환산검사대수

- 검사일정 배정원칙은 아래의 검사일정 배정 가이드를 준수하여 실시한다.

○ 검사일정 배정 가이드

현장수	1현장	2현장	3현장	4현장	5현장	6현장
정기	8.9대 단, E/S, M/W는 9대 이하 적용, 3~5현장은 6대까지 배정가능					X
설치/수시	8.0대 이하 단, 개별인증을 포함하여 일정배정 시 환산대수 6.0 이하로 함		X		X	X
정밀안전	8.0대 이하 단, 4현장 5대 불가			X		X
혼합	현장수+환산대수 10.0 이하					X

※ 혼합일정 배정 시 현장은 1로 적용하며, 검사대수는 환산대수 기준으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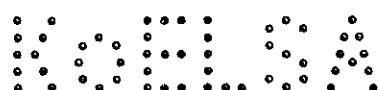


3. 상기 1, 11항에 대해서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의 검토를 거쳐 본부로 통보하며, 노사가 최종 승인 한 방안을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관리한다.

1) 일정배정 시 시스템 산정을 위한 검사 종류별 환산계수

구 분		환산계수	
승강기	엘리베이터 경사형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정기	1
		설치/수시	1.8
		정밀안전	1.5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휠체어리프트	정기	1
		설치/수시	1.8
		정밀안전	1
	화물용, 자동차용	설치/수시/정밀안전	+ 0.1
	4층 이하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제외)	-	- 0.1
	16층~25층	-	+ 0.1
운행 층수	26층~39층	-	+ 0.2
	40층 이상	-	+ 0.3
	60층 이상	-	+ 0.6
	불합격 재검사	전 검사	최초환산계수 적용
확인 검사	전 종류	설치/수시/정밀안전	0.2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 종류



4. 원거리 및 원원거리 지역의 검사출장은 숙박출장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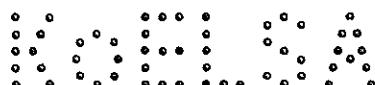
1) 부득이하게 원거리 및 원원거리 지역을 당일출장으로 하는 경우 최대 환산 검사대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현장 + 대수
근무지에서 검사현장까지 편도 60분 이상 ~ 90분 미만	7 이하
근무지에서 검사현장까지 편도 90분 이상	6 이하

2) 지사별 원거리 및 원원거리 지역은 아래와 같다.

지역 본부	지사/출장소	편도 60분 이상 ~ 90분 미만 지역	편도 90분 이상 지역
부산 경남	경남서부지사	거제시, 통영시	-
	진주출장소	거창군, 남해군(미조면, 상주면 제외지역), 합천군(가야면, 덕곡면, 야로면, 쌍책면, 청덕면), 함양군(마천면), 하동군(화개면, 악양면)	남해군(미조면, 상주면)
대구 경북	경북동부지사	영덕군, 영천시, 경주시(양남면),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섬), 을진군
	경북서부지사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 안동시	봉화군
경인	경기북부지사	가평군	-
	인천남부지사	-	옹진군(백령도, 송봉도, 연평도, 자월도, 소청도, 대청도, 덕적도, 장봉도)
	인천서부지사	-	강화군(불음도)
경기 강원	평택안성지사	안성시(일죽면)	-
	강원지사	평창군, 영월군, 단양군	정선군, 태백시
	강릉출장소	속초시, 삼척시(도계읍, 원덕읍, 하장면), 고성군	-
	춘천출장소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성남지사	양평군(양서면, 청운면, 단월면 제외지역)	양평군(청운면, 단월면)
	용인지사	이천시(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사음동, 고담동, 장록동 제외지역)	-
	대전지사	영동군	-
충청	세종지사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삼시도, 원산도)
	충남지사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석문면)	태안군
	충북지사	음성군(생극면, 감곡면), 괴산군(연풍면)	충주시
	전남동부지사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도양읍)	여수시(거문도), 고흥군(봉래 면)
호남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삼호읍), 무안군(삼향읍, 해제면),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신안군(자은도, 안좌도, 팔금도), 신안군(섬: 가기도, 비금도, 도초도, 하의도, 장산도, 흑산도, 흥도)
	전북동부지사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
	전북서부지사	고창군, 부안군(진서면, 변산면)	-
	제주지사	서귀포시	제주시(추자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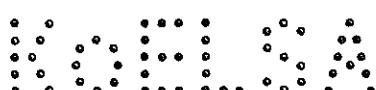
* 반기별 도로교통 여건 등 지사의견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노사협의 후 시행



5.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검사자별 검사부하 평준화를 위하여 검사자 등급별 검사대수비율을 과도하지 않게 관리한다.
6. 임신한 검사원의 경우에는 휴일·야간검사를 배정하지 않으며, 검사행정 등 내근업무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7. 검사와 관련된 휴일·야간검사는 휴일·야간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현장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 휴일·야간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현장을 검사하는 경우 환산대수 8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대수를 추가할 수 있다.
8.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휴일·야간검사는 최소 24시간 전에 검사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9. 휴일·야간검사는 일방적인 통보나 강압적 지시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며, 검사자 본인이 대체휴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0. 휴일·야간검사의 운영

- 1) 1일 검사물량에 대해 주간검사와 야간검사를 혼합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 2) 야간검사
 - 휴일에는 야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평일 야간검사는 22시~익일 06시에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한다.
 - 고객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되, 가급적 연중무휴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승강기 운휴일이 있는 경우는 운휴일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협의 필요)
 - 평일에 야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일 주간근무는 실시하지 않으며, 야간검사에 따른 보상휴무 4시간을 익일 오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휴일(휴무일, 토요일, 일요일)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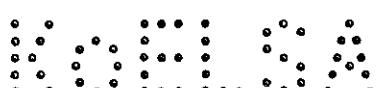
- 휴일검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급적 배제하되, 고객이 휴일·야간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현장에 한하여 실시한다.
- 휴일에 검사일정 배정 시 주중 1일의 대체휴무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주관부서 협의 후 실시하며 1.5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한다.

11. 검사일정 및 검사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 근무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 혹서기(6~8월) 및 혹한기(1~2월)에는 검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주 2회 스마트 근무시스템을 보장하며, 기상경보(폭염, 한파, 호우, 대설, 태풍 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스마트 근무시스템을 보장하도록 한다.
- 2) 혹서기 및 혹한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지역사무소별 노사가 정하는 “적정 검사대수 초과 발생일”에 한하여 주 2회 스마트 근무시스템을 실시한다.

12. 검사자의 연간 검사가능일수에서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휴일, 공가, 특별휴가, 인재경영실에서 인정하는 경우
 - 2) 사용 연차
 - 3) 대체휴무
 - 4) 내·외부 교육
 - 5) 지사별 운영조 비율에 따른 업무담당자
 - 6) 지역별노사협의회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 7)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 ※ 야간·휴일검사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는 당해 연도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특수현장(도서산간지역, 원자력발전소 등 현장이동이나 출입의 제한으로 인해 일일검사대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현장)은 제외한다.



1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소속 지사간 검사적정주기의 편차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사무소에 갑작스런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근지사와 협의하여 인력지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본부는 지역본부간 편차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14. 공단본부는 매월 지역사무소별·검사자별 검사실적을 검토·분석하여 검사자별 검사부하가 평준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조합에 통보한다. 다만, 단체협약 제60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된 해당일자는 검사실적에서 제외한다. 끝.

No.01.08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위험기계 분야)

[단체협약 제57조 관련]

1. 위험기계 검사원의 월간 1일 평균 검사대수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수를 포함하여 10대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검사원의 연간 총 검사 대수는 1,900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위험기계 검사원은 기술용역(안전진단, 공모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용역은 수입금액을 해당월의 해당지역사무소 안전검사 평균단가 (대상품이 안전검사 대상일 경우 안전검사 수수료)로 나누어 검사대수를 산정하며 10대를 초과하는 경우 10대로 한다.
3. 위험기계 검사원이 기술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검사대수는 총 합산하여 10대를 초과할 수 없다.
4. 지역사무소의 장은 1항~3항에 따른 검사대수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검사원별로 검사부하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휴일(또는 야간)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의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휴일(또는 야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복무규정을 따른다.

No.01.08

7. 위험기계 검사원은 검사일정 및 검사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무 관리자의 관리 하에 검사현장 출·퇴근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혹서기(6~8월) 및 혹한기(1~2월)에는 검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최소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기상경보(폭염, 한파, 호우, 대설, 태풍 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검사현장 출·퇴근을 보장하도록 한다.

8. 위험기계 검사원의 연간 검사가능일수에서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휴일, 공가, 특별휴가, 복무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 2) 사용연차
- 3) 대체휴무
- 4) 내·외부 교육
- 5) 지역별노사협의회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 6) 현장이동이나 출입의 제한이 있는 특수현장(도서산간지역, 원자력 발전소 등)으로 일일 검사원 당 5대 미만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7)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9. 공단본부 사업 주관부서는 지역사무소별 일일처리 검사대수 편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심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공단본부 사업 주관부서는 매월 지역사무소 및 검사원별 검사 실시 대수를 검토·분석하여 지역사무소에 안내하여야 하며, 1항에 따른 적정 검사 대수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산업안전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본 부속합의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사간 합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끝.

NoESEA